

## 하도급지킴이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"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"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

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 품 명 : 하도급지킴이
- 상품특징 :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"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"을 통하여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임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하기 위한 시스템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

### 2 거래 조건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■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)
상품종류	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거래방법	■ 신규 : 영업점을 통해 가능 ■ 해지 : 영업점을 통해 가능
이자지급시기	■ 원금 및 이자는 고객의 지급 요청 시 고객 앞 지급됩니다. ■ 이자는 매년 1, 4, 7, 11 월 둘째 주 최종 영업일의 다음 날 원금에 가산합니다.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■ 계좌에 <b>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</b>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■ <b>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</b> 에는 입금, 출금,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.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<b>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</b>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					
기본이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.01% (연, 세전, 2025년 07월 11일 현재)</li> </ul>						
이자 산출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자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총 입금액에 해당이율을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이자지급일에 지급합니다(선입선출법). 단, 이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.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이자계산기간</th> <th>이자결산일</th> <th>이자지급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난 이자지급일(또는 신규일)부터 다음 이자결산일</td> <td>매년 1월, 4월, 7월, 10월의 둘째 주 최종 영업일</td> <td>이자결산일의 다음 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이자계산기간	이자결산일	이자지급일	지난 이자지급일(또는 신규일)부터 다음 이자결산일	매년 1월, 4월, 7월, 10월의 둘째 주 최종 영업일	이자결산일의 다음 날
이자계산기간	이자결산일	이자지급일					
지난 이자지급일(또는 신규일)부터 다음 이자결산일	매년 1월, 4월, 7월, 10월의 둘째 주 최종 영업일	이자결산일의 다음 날					
예금자보호 여부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해당</b></p>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li> </ul>						
세제혜택	<p><b>불가능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사항없음</li> </ul>						
양도 및 담보제공	<p><b>양도 불가능</b></p> <p><b>담보제공 불가능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양도 불가능합니다.</li> <li>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.</li> </ul>						
거래중지계좌 편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별도 관리하여 <b>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</b>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고객께서 위 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은행창구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<b>금융거래 목적 및 본인 확인 후</b>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예금잔액이 10,000 원 미만이며,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</li> <li>(2) 예금잔액이 10,000 원 이상 50,000 원 미만이며,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</li> <li>(3) 예금잔액이 50,000 원 이상 100,000 원 미만이며,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</li> <li>(4) 예금잔액이 100,000 원 이상이며, 4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</li> </ol>						
계약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 예금 계약의 해지는 <b>기업금융지점</b>을 통해 가능합니다</li> </ul>						
휴면예금 및 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자지급을 포함한 <b>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</b>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<b>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</b>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휴면예금은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sleepmoney.or.kr">www.sleepmoney.or.kr</a>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</li> </ul>						

<b>수수료</b>	■ 통장 재 발행 시 수수료 2,000 원
<b>연계·제휴 서비스</b>	■ 해당사항 없음
<b>기타 주요내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위하여 한국씨티은행의 "기업인터넷뱅킹 서비스"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■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.</li> <li>■ 이 예금의 출금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"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"의 이체 요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, 창구·인터넷/스마트폰/폰뱅킹·CD/ATM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합니다.</li> </ul>

### 3 | 유의 사항

-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"은 조달청의 「나라장터」를 통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대금 및 임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하며, 이 예금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좌로서,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이 예금을 해지할 경우, 잔액이 일십만원(100,000원)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.
- 이 예금은 "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"을 통하여 입금 및 지급된 거래는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, 조달청 「나라장터 고객센터」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조달청 「나라장터 고객센터」 ☎ 1588-0800 (평일 09:00~18:00) / e-mail: freelyun@korea.kr

#### • 금리의 변경

상기 금리는 은행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리가 변경일부터 적용됩니다. 변경된 금리는 "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 2 항" 및 "현지약관 제 9 조 3 항"에 의거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#### • 약관의 변경

이 상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은행의 사정에 의해 상품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 관련 사항을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약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"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2 항" 및 "현지약관 제 22 조 제 2 항" (2014년 9월 7일 이전 계좌 개설의 경우 "현지약관 제 21 조 제 2 항")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.

- 이 상품은 한국씨티은행 기업자금상품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**고객센터(1588-7000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[www.citibank.co.kr](http://www.citibank.co.kr))**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**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** 또는 **e-금융민원센터(<https://www.fcsc.kr>)**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<부록>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</li></ul>
가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</li></ul>
질권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, 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</li></ul>
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</li><li>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</li></ul>
경과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</li></ul>